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611호 2021. 7. 26(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 고시 ----- 1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00호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공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0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21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22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27호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 25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3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20 외 2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7.2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7-2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5-1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20 (가정동)	20121025	봉오재 안 옛지명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로 51 (금곡동)	20191223	금곡이 동쪽하여 먹음직스러운 모양을 이르는 순 우리말에서 착안	
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383 (원당동)	20200420	'서로를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첫번째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80 (원당동)	20200420	'서로를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다섯번째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68	인천광역시 서구 간지로109번길 27 (석남동)	20090922	간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915	인천광역시 서구 간지로109번길 29 (석남동)	20090922	간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916	인천광역시 서구 간지로109번길 31 (석남동)	20090922	간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월길동 556-19	인천광역시 서구 갈단로326번길 62 (월길동)	20081231	갈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99-4	인천광역시 서구 갈단로777번길 26-34 (불로동)	20081231	갈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5, 395-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62-1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향리동 71-30	인천광역시 서구 향리안대로174번길 16 (향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겸한 대로, 호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80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262번길 10-6 (석남동)	20210531	중봉대로 시작점의 2,620M 지점에서 분기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82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262번길 10-10 (석남동)	20210531	중봉대로 시작점의 2,620M 지점에서 분기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고시일 : 2021-7-26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만월로81번길 30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만월로81번길 28 (오류동)	건축물대장 결함	20200720	만월로 시점에서 810미터 지점에서 분기한 도로	
	20200720			만월로 시점에서 810미터 지점에서 분기한 도로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1-7-26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69-6 (왕길동)	건물말소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90 (가좌동)	건물말소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514-11 (왕길동)	건물말소	20081231	오름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안성암미늘
4	인천광역시 서구 열곡로 262-1 (석남동)	건물말소	20090922	천일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95번길 21 (석남동)	건물 말소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동
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110번길 4-5 (석남동)	건물말소	20090922	석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110번길 4-3 (석남동)	건물말소	20090922	석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110번길 6-2 (석남동)	건물말소	20090922	석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110번길 6 (석남동)	건물말소	20090922	석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열곡로311번길 18-1 (석남동)	건물말소	20090922	열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64 (오류동)	건물말소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314번길 5-3 (왕길동)	건물말소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300호

##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2. 공고기간 : 2021. 7.26. ~ 2021. 8.10.(16일간)
3.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74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4.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구보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보관목록 : 공고 대상(세부 붙임 참조)

적치물등의 품명·규격·수량	위반 장소	보관일시 및 장소	취급자	비고
의자 2건	신현동 301	2021. 7.26. ~ 8.26.(1개월) 원창동 385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청	
타이어 7건	중봉대로771번길 5-4번지			
파레트 2건	석남동 223-563			
나무목 1건	봉오재3로 110-7			

## 6. 적치물처리

가.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 (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귀속·폐기처분되며,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적치물의 제거·운반·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과(☎ 032-560-44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301호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0-182호(1990.12.2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시설: 공공청사, 사업명: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내 부설주차장 확장공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8-8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 내 부설주차장 확장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 사업면적: 761.7m<sup>2</sup>
- 사업내용: 부설주차장 조성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 변경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석남동	488-8	대	761.7	761.7	기획재정부	-	-	-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본관4층 도시기획담당관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321호

##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입법취지(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에 근거한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비

### 2. 주요내용

-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및 ‘2021년 가족사업안내지침’에 근거하여 업무위탁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가정보육과, 전화 032-560-5735, 팩스 032-560-2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에 근거한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지 참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규제심사대상 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운영) ① (생 략)</p> <p>② 위탁기간은 <u>3년</u>으로 하며 사업 수행능력 및 위탁기간 중 사업평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p>	<p>제6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5년</u>----- ----- -----.</p>

## 관계법령 발췌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조 및 제34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피. (생략)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 2021년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 IV.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3.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2) 수탁기관 선정

##### 라) 위탁계약의 체결

##### ○ 위탁기간

- 5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음. 단, 다기능화 센터를 신설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만기 이내로 함.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322호

##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7.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입법취지(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에 근거한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비

### 2. 주요내용

-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및 ‘2021년 가족사업안내지침’에 근거하여 업무위탁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가정보육과, 전화 032-560-5735, 팩스 032-560-2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한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지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규제심사대상 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② (생략)</p> <p>③ 지정운영 기간은 <u>3년</u>으로 하되, 재지정할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p>	<p>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② (생략)</p> <p>③ ----- <u>5년</u>-----</p> <p>-----</p> <p>-----.</p>

## 관계법령 발췌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조 및 제34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머. (생략)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허. (생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        |  |
|--------|--|
| 비<br>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327호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 을 위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점용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7.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명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7. 26. ~ 2021. 8. 13.(18일간)
3.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공유재산법」 제8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4.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공고대상 및 내역

행위자	소재지	무단점유 내용	점용면적	비고
미상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91-4	적치 (건설장비(포크레인 바스켓), 컨테이너)	약20㎡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865-18			

### 6. 지시 및 고지사항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점유 중인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공유재산법」 제8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 하오니 2021. 8. 13.까지 이행하여 주시고

- 나.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우리 서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과(☎ 032-560-4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